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조업소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전화번호 :)	
제 조 관리자	성 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제 조하려는 품목명			
제 조 대 상	동물용	☐ 농림축산용	☐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의약외품의 용도	☐ 농수산 검용	☐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2.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1부(제조관리자 승인을 받은 사람을 제조관리자로 두려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3.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명세서(구조개요 및 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명세를 포함합니다) 4. 동물용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조관리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조관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교부)